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10. 6.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0. 6.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행정사무의 시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따라 구분·통일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및 준용 조항 구체화 → 제18조제2항

나. 행정사무의 시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따라 구분·통일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 용어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1) 기획예산담당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2)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36649(2023. 9. 19.)]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1397호
 - 가) 예고기간: 2023. 8. 31. ~ 9. 20.(20일간)
 - 나) 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의”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화 하며”를 “생활화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견시”를 “발견 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군은”을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환경보전 기본시책”을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을 “(환경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년차별”을 “연차별”로, “군 환경

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을 “고성군 환경계획(이하“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군은 환경기본계획”을 각각 “군수는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을 “변경 시 환경계획”으로 한다.

5.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사업시”를 “사업이”로, “강구·시행”을 “마련·시행”으로 한다.

제10조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를 “법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환경위원회의 설치등)”을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환경보전시책”으로, “군환경위원회”를 “고성군 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을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연환경의 보존)”을 “(자연환경의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군민·사업자는”을 “모든 군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설치등”을 “설치 등”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군은”을 각각 “군수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확보한다”를 “필요한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환경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
2. 민간환경단체가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3.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21조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와 군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하여 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본이념) ① <u>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u></p> <p>② <u>본군의 환경발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③ <u>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고성군의 환경보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본이념) ① <u>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 ----- ----- ----- -----.</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③----- <u>제1항</u>----- ----- -----.</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p>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

② (생 략)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 4. (생 략)

제7조(환경백서) ①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장 환경보전 기본시책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군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생활화하며 -----
-----.

1. ----- 발견 시-----

--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환경백서)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등

제8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
----- 연차별
----- 고성군
환경계획(이하“환경계획”-----
-----.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군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군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은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환경영향검토) 군은 군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시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

② 환경계획-----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그 밖
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

-----.

④ 군수는 환경계획-----

-----.

⑤ 군수는 -----
----- 변경 시 환경계획-----

-----.

제9조(환경영향검토) 군수는 ---
----- 사업이 ---

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조치) 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군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환경위원회(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마련·시행-----.

제10조(규제조치) 군수는 -----

법에 따라 -----
-----.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군수는 -----

마련-----.

제12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등) ① 환경보전시책-----
----- 고성군 환경정책위원회-----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1. 환경계획-----
--

2. ~ 5. (생략)

⑤ 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

⑥ 환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존) ① 군 · 군민 ·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의 공개)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

2. ~ 5. (현행과 같음)

⑤-----
--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⑥-----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모든 군민은 -----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 설치 등 -----

-- 마련-----.

제14조(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

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② (생략)

제15조(환경교육·홍보) 군은 교
육기관, 민간단체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
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 ①군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
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
계를 정비하고 환경전문인력을
확보하며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
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
지, 자연과 환경보전, 기타 환경
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
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
다.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환경교육·홍보) 군수는 -

-----.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 ① 군수
는 -----

-----.

② 군수는 -----

-----.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군수는 -----

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확보한다.

② 군은 군민·사업자등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군수는 -----
----- 필요한 재정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환경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
2. 민간환경단체가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3.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제협력강화) 군은 외국
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제21조(국제협력강화) 군수는 --

-----.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환경과장 정영랑

□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9. 1. 15.>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